

(Ver. 2021)

영사민원업무시간

10:00-12:30 (월-금)

대사관 휴무일,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영사업무접수는 이메일 접수를 우선시합니다.

info@embadomkr.gob.do

대사관 방문시에는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02-756-3513 (통화가능 시간) 10:00-12:30

접수된 민원 답변은 1-2 일 이내로 드립니다.

영사 인증 비용은 하기 저희 대사관 계좌입금 부탁드립니다.

(현금 X, 카드 X)

KEBHANA (KEB 하나은행):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201-890010-11338 (USD 미화계좌): 가까운 은행에 방문 입금

- VISA(비자)수수료: USD 100.00

- 일반 인증 비용: USD 50.00

해외에서 대사관 외화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Name of Bank: KEB Hana Bank (Direction: Taepyeongro Branch)

SWIFT CODE #: KOEXKRSE

(Ver. 2021)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 국가로 무비자 입국 90 일체류 가능한 국가입니다.
반드시 왕복항공티켓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사증면제협정국가 정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참조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무비자(관광비자) 기간연장은 최초 30 일 포함하여 120 일까지이며 도미니카공화국내의 이민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참고: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 <https://www.migracion.gob.do/>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 연장 절차: 해당 문서 3 페이지 참고)

3 개월 이상의 체류 혹은 거주, 업무, 학업 등의 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 하셔야 합니다.

- 관광비자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최초의 비자는 반드시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국적의 사람)
- 무비자로 입국한 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자격변경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 모든 비자 갱신은 현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만 가능 합니다. <https://www.migracion.gob.do/>

◆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웹사이트 해당 비자 참고)

비자 종류	기간	대상
NM (Multiple Business)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로서 도미니카공화국에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하여 방문하려는 자, 특별한 상업의 이득이 있어 방문하려는 자. ** 단, 이 비자는 가족 동반 비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60 일이상 연속체류가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 종교목적(선교사, 부임목사 등): 동반비자 발급됩니다.
NM1 (Working)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미니카공화국에 주재하는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방문하려는 자
RS	60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분들의 경우 이미 도미니카공화국에 RS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직계가족으로서 현지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을 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한국인 ➢ 일정금액의 불로소득 증빙가능한 자, 퇴직연금 수령자, 투자이민(최소 USD200,000)의 해당 *RS 비자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 이민청에서 나머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E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생, 장학생등 학업의 목적으로 6 개월 이상 체류로 방문하려는 자 (미성년자일 경우, 대사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DPM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 NM1 비자종류를 가진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서 동반 출국, 거주해야 하는 자
OM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여권(Official Passport) 소지자
CS o CM	60 일- 1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관에서 승인하고 보증하는 자 (국가기관 관련 공무원 등등)

◆ 기본공지사항

저희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비자 승인 허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Ver. 2021)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승인된 경우만 비자를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의 위조 유-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비서류만 받아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전자시스템으로 스캔하여 전송합니다.

- 비자와 영사관련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info@embadomkr.gob.do
- 비자와 영사관련 업무 시간 : 월-금 (오전 09:30-12:30)
- 비자 승인을 받으시기 전에 비행기티켓을 구입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비자 신청 서류 제출 최소 하루 전에 저희 대사관에 전화로 인터뷰 약속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소요시간 5-10 분) (오전 9:30-12:00)
-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러 오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신청할 경우, 대표자 단독 가능)
- 비자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2 주-3 주, 최대 1 개월이 걸립니다.
- 신청인의 비자 승인이 확정되면, 저희 대사관에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 비자 승인 후 비자 수취를 위해 대사관에 방문 시,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못 올 경우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분께서는 신분증 지참바랍니다.

◆ '참고사항' (비자 취득 후 도미니카공화국 입국관련)

(현재 이민청의 사정과 비자종류에 따라 수속과정이나 필요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제출하셨던 원본 서류를 돌려받게 됩니다.

비자에는 기간이 1년 (혹은 60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발급 받은 체류자격의 비자형태로 입국과 출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자 취득 시 반환 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여 30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스캔(jpg화일)하여 이민청 사이트 (<https://migracion.gob.do/en/servicios/residence/>) 를 통해 등록 및 승인 요청 --> 승인일정을 통보 받은 신청자는 모든 서류 원 본 및 복사본을 이민청에 직접 제출(수속기간 90일 소요) 해야 합니다. (영문과 서어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민청 수속 과정이나, 이민관련 정보는 주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s://overseas.mofa.go.kr/do-ko/brd/m_5870/list.do)

만약 최초의 비자 취득 후 위의 과정을 생략하면 기발급 받은 비자로 갱신이 불가하며, 한국에 귀국하여, 처음부터 신청서류를 다시 만들게 되며 갱신이 아닌, 새로 신청하시게 됩니다.

(Ver. 2021)

체류 연장 절차 (무비자 입국자):

- ㄱ. 일반적으로 무비자(여행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입국하는 경우 여권에 체류 기간 (30일)을 받게 됩니다(입국 도장) . (혹은 60일, 90일까지 받게 됩니다.)
- ㄴ. 여권에 명시된 체류 기간을 넘겨 연장 체류해야 할 경우, 명시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ㄷ. 체류 연장은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이민청 방문 혹은 이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ㄹ. 필요서류: 여권 사본,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입국 도장(체류 기간이 명시된), 귀국 항공 티켓
- 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migracion.gob.do/en/servicios/permits/>
 - 위의 이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이민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받고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합니다.
 - 이민청은 등록할 때, 기입했던 신청인의 이메일로 신청 현황을 통보합니다.
 - 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해 체류 연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공항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 Gobierno de la República Dominicana -